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10

CONTENTS

Ⅰ. 서론

Ⅱ. 황혼이혼 정의의 문제점

Ⅲ. 새로운 황혼이혼 정의

Ⅳ. 새 기준으로 본 황혼이혼 실태

Ⅴ. 결론 및 시사점

심현정 선임연구원
02-3774-6984 | hesed_shj@miraeasset.com

※ 이 보고서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저자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요 약>

◉ 최근 보도되는 황혼이혼의 심각성에 비해 실제 고령자의 이혼율은 높지 않은데, 이는 관행적으로 황혼이혼을 '동거기간 20년 이상'으로 정의한 데서 기인한 문제임.

◉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거기간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는 황혼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새 기준에 따르면 황혼이혼 집단의 특성이 다음과 같이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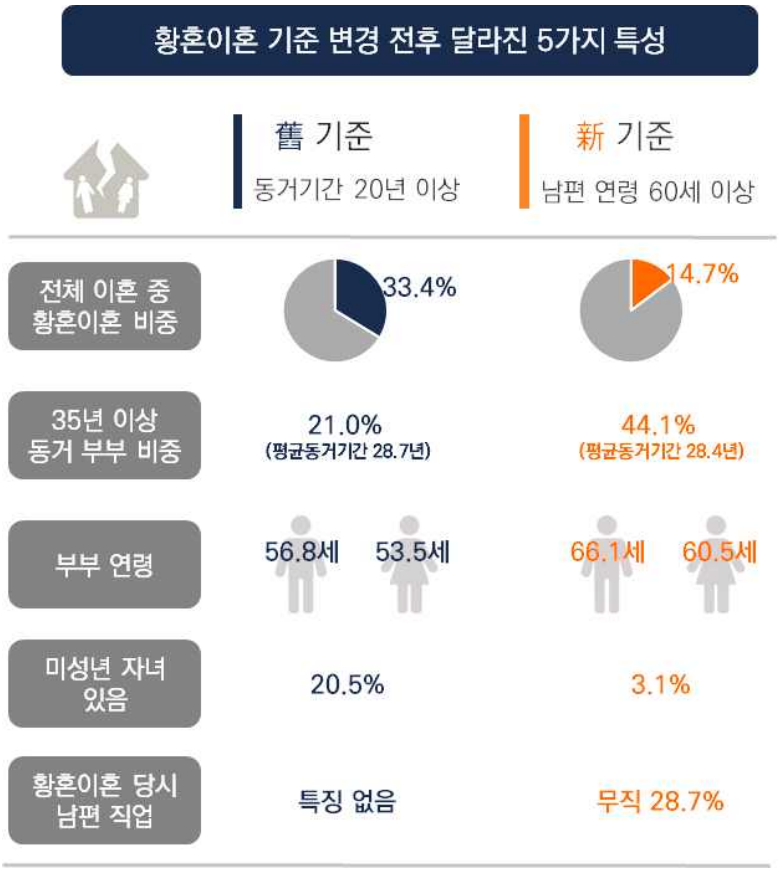

– 동거기간 기준의 정의에 비해, 연령 기준의 정의는 은퇴기 이혼의 특성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냄.

◉ 새로운 기준에서 정의한 황혼이혼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혼 건수나 이혼율이 현저히 낮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Ⅰ. 서론

◉ 최근 언론에서는 황혼이혼이 급증했으며, 전체 이혼의 1/3이 황혼이혼이라며 그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음.

– '황혼이혼'과 관련된 보도는 최근 5년 간 약 6,186건, 최근 1년 1,416건에 이름.

◉ 그러나 실제 고령자의 이혼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지 않고 이혼율도 높지 않음.

– 2018년 총 108,684건의 이혼 중 60대 이상 남성의 이혼은 16,029건(14.7%)임.

· 40대 35,793건(32.9%), 50대 29,794건(27.4%)에 60대의 이혼은 적은 편임. (남성연령기준)

– 2018년 60대 이상 남성 천 명 당 이혼 건수는 3.3건으로 40대 8.3건, 50대 7.0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언론보도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는 이유는 '황혼이혼' 용어의 정의 때문임.

– 그동안 '황혼이혼' 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 각계에서는 자료의 성격 및 저술 의도에 따라 황혼이혼을 다양하게 규정해왔음.

· 인구동향조사 및 사법연감을 인용한 경우 '동거기간 20년 이상'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구분함.
· 고령자통계를 인용한 경우 '65세 이상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지칭함.
·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인식조사에서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혼인지속기간이 아닌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하는 '고령·은퇴기'의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만혼화 및 이혼과 재혼의 보편화로 혼인지속기간과 개인 생애 간 상관관계가 약해져 혼인지속기간으로는 더 이상 은퇴기의 이혼을 규정하기 어려움.

◉ 본 보고서는 황혼이혼의 기존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황혼이혼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황혼이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Ⅱ. 황혼이혼 정의의 문제점

1. 황혼이혼에 대한 국내외 정의

◉ **은퇴기 이혼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사회적 현상임. 다만, 각 나라마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와 통계적 정의가 상이함.**

① 미국에서는 50세 이후의 이혼을 'Gray divorce'로 표현하고 있음.

· 'Gray divorce' 는 2004년 AARP(전미은퇴자협회)의 『The Divorce Experience: A Study of Divorce At Midlife and Beyond』 보고서를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

· 2015년 50대 이상 기혼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는 10건임. (40대: 21건, 25-39세: 24건)

② 영국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이들을 'Silver splitter' 로 표현함.

· 영국의 60세 이상 이혼 건수는 2000년 10,273건에서 2011년 15,275건으로 증가함.

· 장수, 자녀의 성장과 독립 이후 새로운 니즈의 발견,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가 은퇴기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③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혼인 지속 후 이혼하는 경우를 '숙년이혼'으로 지칭함.

· 2016년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은 37,604건으로 전체 이혼의 17.3%를 차지함.

· 2005년 '숙년이혼(熟年離魂)'이라는 TV 드라마를 계기로 노년기의 이혼이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함. 숙년이혼은 주로 오랫동안 함께하던 부부가 남편의 정년퇴직 등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혼하는 경우를 의미했음.

◉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기의 이혼을 정의하나, 일본과 한국은 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사회는 서구권보다 결혼을 통한 가정 형성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대와 혼인지속기간의 상관관계가 높음. 이에 따라 편의상 동거기간 통계치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구분해온 것으로 추측됨.

2. 동거기간 기준 황혼이혼 정의의 한계

◉ 동거기간은 혼인 및 이혼 경향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측면에서 그 적합성 및 일관성이 떨어짐.

① 20년 이상 동거 후 이혼한 부부를 살펴보면, 4-50대 중장년층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동거기간 20년'을 황혼이혼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음.

· 초혼 연령이 빨랐던 1997년에는 동거기간 20년 이상 이혼 중 남편 연령이 54세 이하인 경우가 74.8%를 차지함.

· 1997년 당시 동거기간 20년 이상 이혼에서 남편 평균 연령은 51.1세, 여성은 46.8세임.

② 만혼(晩婚)화 경향이 부부의 동거기간에 영향을 주어 동일하게 '황혼이혼'으로 불리더라도 시대에 따라 해당되는 주요 연령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1997년 동거기간 20년 이상 이혼에서는 40대 후반 및 50대 초반이 주된 연령대였으나, 2018년에는 50대 초반 및 후반이 주 연령대가 되고, 60세 이상도 31.4%를 차지함.

<도표 1> 동거기간 20년 이상 이혼 부부의 남편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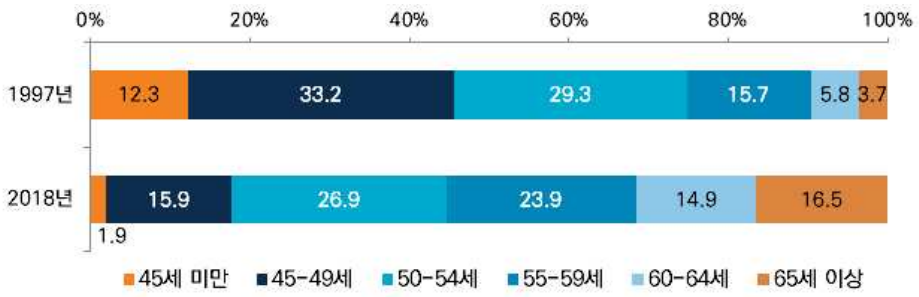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③ 결혼이 늦어지고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퇴기에 이혼하더라도 동거기간이 짧아 황혼이혼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만혼화 경향으로 50대 이후에 이혼하더라도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가 늘어남.

※ 남성 초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에는 26.3%였으나, 2018년에는 70.2%로 증가함. 40대 비중도 0.5%에서 6.8%로 증가하는 등 만혼화가 진행됨.

·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면 동거기간이 짧아져 황혼이혼으로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35세에 이혼 후 45세에 재혼, 63세에 다시 이혼하면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이어서 황혼이혼에 집계되지 않음.

Ⅲ. 새로운 황혼이혼 정의

1. 연령 기준의 황혼이혼 정의

◉ **'남편 연령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은퇴기의 이혼을 의미하는 황혼이혼의 새로운 정의로 설정함.**

–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은 고령·은퇴기에 하는 이혼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동거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함.

· 英, 美의 경우도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기의 이혼을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남편**' 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인 이혼을 황혼이혼으로 정의함.

· 대체로 남성의 은퇴를 계기로 부부의 생활패턴 및 관계가 변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중 '남편' 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 연령 기준을 '만 60세'로 정한 것은 퇴직 및 은퇴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고려한 것임.

※ 2016년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됨.

2. 새로운 황혼이혼 정의의 효과

◉ **황혼이혼을 동거기간이 아닌 남편 연령을 기준으로 재정의하면, 다음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황혼이혼 집단의 특성이 더욱 명확해짐.**

① 황혼이혼 비중

– 新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은 14.7%임.** 동거기간으로 구분한 舊 기준에서의 비중(33.4%)보다 18.7% 포인트 낮아짐.

· '동거기간 20년 이상'을 기준선으로 삼은 舊 기준은 황혼이혼을 다소 광범위하게 구분하여, 고령기의 이혼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2018년 전체 이혼 부부의 동거기간 중앙값이 13년, 평균이 15년임을 감안하면 고령기 이혼을 구분하는 동거기간 기준선이 다소 낮아 보임.

<도표 2>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율 (2018년)

<舊 기준: 동거기간 20년 이상> <新 기준: 남편 연령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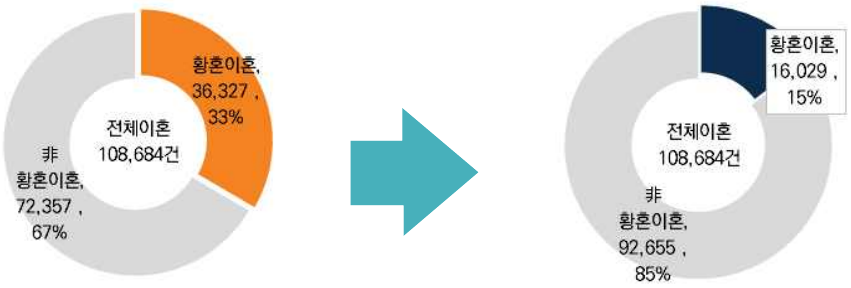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분석

② 황혼이혼 부부의 동거기간

– 新 기준에서 **황혼이혼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28.4년**으로 舊 기준(28.7년)와 큰 차이는 없음.

– 그러나 기준에 따라 **황혼이혼 부부의 동거기간 분포는 큰 차이가 있음.** (도표3)

· 舊 기준의 황혼이혼에서는 동거기간이 '20-24년'인 경우가 36%로 가장 많지만, 新 기준에서는 '20년 미만'이 28.9%로 가장 비중이 높고, '20-24년'은 4.7%에 불과함.

<도표 3> 평균 동거기간 및 동거기간 분포 (2018년)

<舊 기준: 동거기간 20년 이상>

<新 기준: 남편 연령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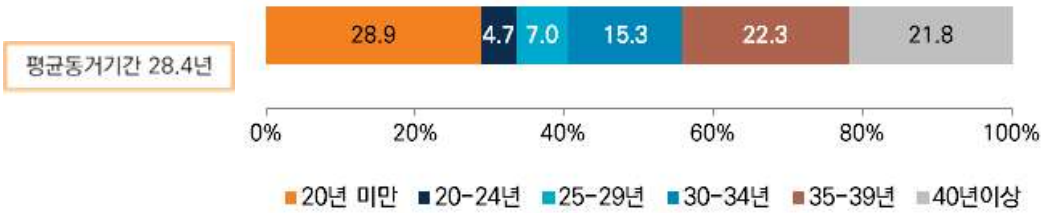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분석

· 新 기준 하에서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이 28.9% 인데, 35년 이상인 경우도 44.1%나 되어 동거기간이 양극화되어 분포함.

· 은퇴기의 이혼임에도 동거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만혼화 및 이혼·재혼 경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동거기간과 부부연령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 60세 이후 이혼했지만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인 4,632쌍(16,029쌍의 28.9%)은 舊 기준에서는 '황혼이혼'에서 누락되었지만, 新 기준에서는 제대로 구분됨.

③ 황혼이혼 부부의 연령

– 新 기준에서 황혼이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 66.1세, 아내 60.5세임. 반면, 舊 기준에서 남편 평균 연령은 56.8세, 아내 53.5세로 은퇴기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임.

– 황혼이혼 당시 아내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舊 기준보다 新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알 수 있음.

· 舊 기준에서 황혼이혼으로 구분된 경우의 36%는 아내가 40대에 해당하는데, 아내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황혼이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반면, 新 기준에서는 아내 연령이 50대인 경우가 39%, 60대는 46%로 고령층이 다수 포함됨.

<도표 4> 황혼이혼 부부의 평균 연령 및 아내 연령 분포 (2018년)

<舊 기준: 동거기간 2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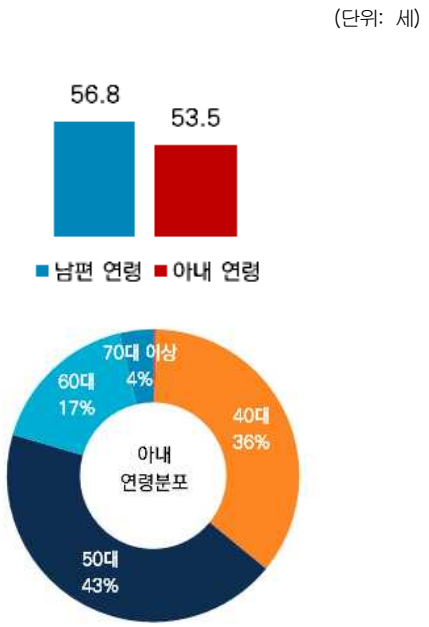

<新 기준: 남편 연령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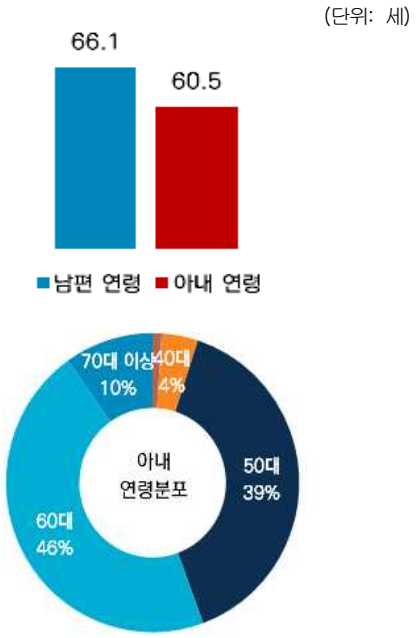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분석

④ 미성년 자녀 비중

– 舊 기준에서 황혼이혼 부부의 20.5%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나, 新 기준에서는 3.1%만 미성년 자녀가 있었음.

– 자녀가 독립하여 양육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황혼이혼의 계기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新 기준의 황혼이혼 정의가 현실에 보다 부합함을 알 수 있음.

⑤ 황혼이혼 당시 남편의 직업

– 新 기준의 황혼이혼에서는 남편 직업 중 '학생·가사·무직'이 2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舊 기준에서 황혼이혼 당시 남편의 직업과 전체 이혼 부부의 남편 직업을 비교했을 때, 학생·가사·무직'이 전체보다 약 5% 포인트 많긴 하나 그 외는 큰 차이가 없음.

<도표 5> 이혼 당시 남편 직업 (2018년)

(단위:%)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원/기계조립	단순노무	학생·가사·무직	미상/군인	전체
전체 이혼 부부	8.2	11.6	10.5	19.3	3.0	13.7	10.6	10.4	12.8	100.0
동거기간 20년 이상 (舊)	8.2	9.5	7.9	16.2	3.3	13.0	12.4	15.2	14.2	100.0
남편연령 60세 이상 (新)	5.2	6.3	3.6	11.3	5.0	9.1	13.3	28.7	17.4	100.0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분석

Ⅳ. 새 기준으로 본 황혼이혼 실태

1. 황혼이혼[1] 이혼율

◉ 황혼이혼은 4-50대의 이혼에 비해 건수도 적고 이혼율도 낮음. 일반이혼율은 천 명 당 3.3건이며, 유배우 이혼율도 가장 낮은 2.0건에 불과함.

– 2018년 황혼이혼은 16,029건임. (60대 12,252건, 70대 이상 3,777건). 40대(35,793건) 및 50대(29,794건)의 이혼에 비해 건수가 적은 편임.

– 황혼이혼(60세 이상 남성)의 일반이혼율은 3.3건으로 40대(8.3건) 및 50대(7.0건) 남성의 일반이혼율의 절반도 되지 않음.

– 황혼이혼 유배우이혼율[2]은 2.0건으로 2015년 전체 유배우이혼율 4.6건의 절반에 못 미치고, 40대(6.1건)나 50대(4.5건)에 비교해도 낮음. (도표 7)

<도표 6> 황혼이혼 건수 및 일반이혼율

※ 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 원자료 분석

<도표 7> 황혼이혼 유배우 이혼율 (2015년)

(건)

※ 자료: 2015년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 지난 25년간 황혼이혼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이혼 건수와 이혼율 모두 증가 추세가 뚜렷함.

1) 이하에서 황혼이혼은 이혼 부부 중 남편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연령 기준은 남편의 연령을 의미함.
2) 연령별 유배우이혼율은 남녀 모두를 포함한 해당 연령 기혼인구 천 명 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며, 기준이 되는 유배우 인구(기혼인구)는 5년 주기로 시행된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함.

– 40대 이하의 이혼 건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이혼과 60대 이상 황혼이혼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더 높음.

· 황혼이혼 건수는 1993년 1,157건에서 2018년 16,029건으로 13.8배 증가하여 50대 이혼(동기간 4,192건에서 29,794건으로 7.1배 증가)보다 증가율이 높음. (도표 8)

<도표 8> 남성 연령대별 이혼 건수 추이

(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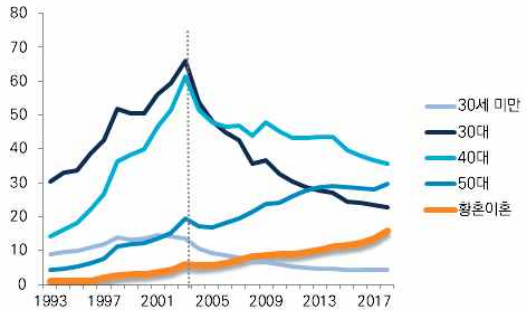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도표 9> 여성 연령대별 이혼 건수 추이

(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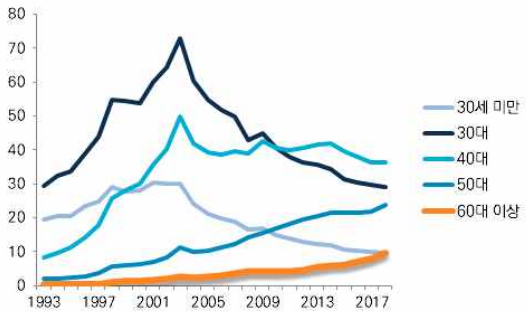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이혼 건수를 해당 연령 인구로 나눈 일반이혼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황혼이혼(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임. (도표 10)

· 50대 남성의 경우, 이혼건수는 증가했으나 이혼율은 2003년을 전후로 횡보하고 있음. 이는 이혼 증가가 이혼율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50대 인구 증가의 효과였음을 보여줌.

–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60대의 유배우 이혼율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기혼인구 중 이혼 비중을 나타내는 유배우이혼율은 2005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표 11)

· 황혼이혼의 유배우이혼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증가 추세라는 점을 주목해야 함.

<도표 10> 남성 연령대별 일반이혼율 추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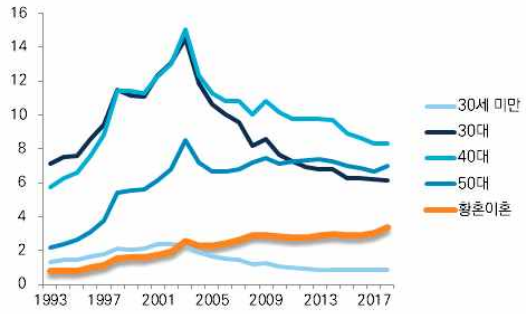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인구 원자료 분석

<도표 11> 유배우이혼율 추이(남성연령기준)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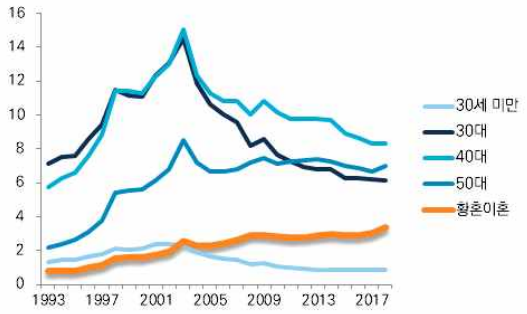

※ 참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원자료 분석

– 현재 황혼이혼의 건수 및 이혼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혼이혼 추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혼율 지표>

①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CDR)
: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② 일반이혼율 (General Divorce Rate, GDR)
: 특정 1년 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15세 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③ 유배우이혼율 (Divorce rate of married person)
: 1년 동안에 신고된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조이혼율 또는 일반이혼율은 이혼 건수에 초점을 맞출 때 유용한 개념임. 한편, 유배우 이혼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중 몇 건의 이혼이 발생하는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집단을 비교하면 어느 집단의 부부가 이혼 경향이 강한지 비교할 수 있음.

※연앙(年央)인구 : 해당연도 연앙인구는 해당연도 1월 1일의 주민등록인구와 해당연도 말일의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으로 구해지며, 평균인구의 개념으로 인구동태율 산출시 분모인구로 활용됨.

2. 황혼이혼 비중

◉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 중 14.7%를 차지하며, 이 비중은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황혼이혼 비중: 1993년 2.0% → 2018년 14.7% (도표 12)

–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1) 남성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늘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음.

※ 이혼 건수 : 1993년 1,157건 → 2018년 16,029건
이혼율 : 1993년 0.8건 → 2018년 3.3건 (60대 이상 남성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2) 기혼인구의 연령 구성을 보면, 젊은 인구 비중은 줄고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남.(도표 13)

※ 기혼남성인구 중 60대 이상 비중은 1990년 11.9%에 2015년 28.4%로 증가함. 이 경우 전 연령대 이혼율이 동일하더라도 60대 이상 이혼의 비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함.

<도표 12> 남편 연령대별 이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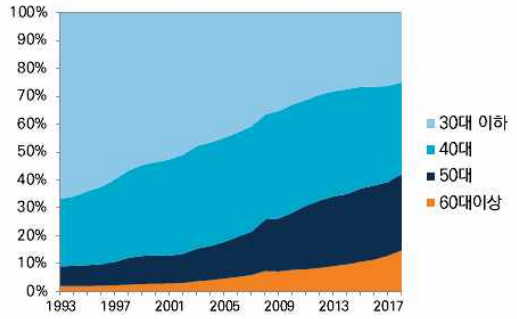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도표 13> 기혼남성인구의 연령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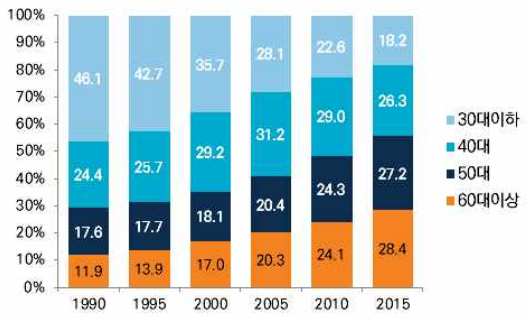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이혼율 외에 고령자가 증가하는 인구구조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은퇴기의 이혼이 많아지고 있으며, 노년기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면 과장된 해석이 됨.

V. 결론 및 시사점

◉ 혼인 및 이혼 경향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거기간 기준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해야 함.

– 과거와 달리 초혼이 늦어지고 이혼 및 재혼이 자유로워지면서, 동거기간과 연령의 상관관계가 약해져 동거기간으로 은퇴기의 이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짐.

◉ 황혼이혼의 기준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인 이혼'으로 정의하면, '은퇴기의 이혼'을 구분하는 생애설계적 관점과 정의가 일치될 수 있음.

◉ 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은퇴기 이혼으로서의 황혼이혼 특성과 실태가 보다 분명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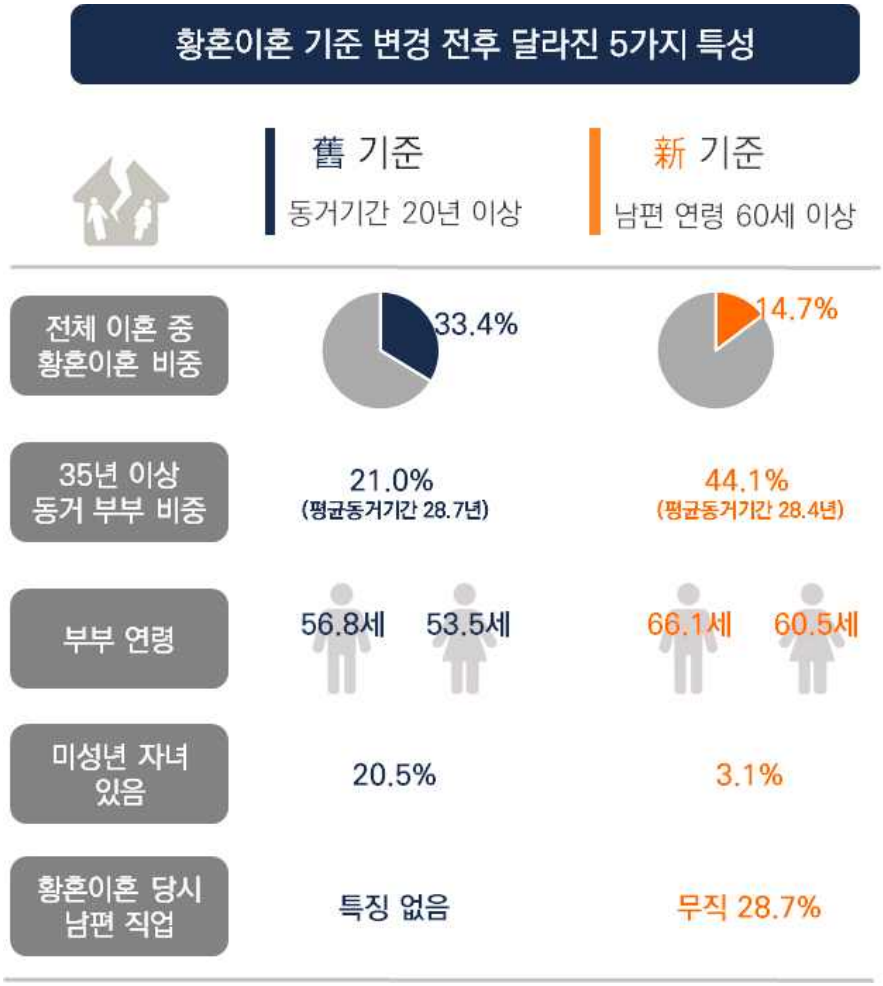

◉ 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 황혼이혼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이혼 건수나 이혼율이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이혼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함.

– 황혼이혼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혼 건수도 적고 이혼율도 낮기 때문에 당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다른 연령대의 이혼은 줄어드는데 비해 황혼이혼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의 이혼율 및 유배우이혼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살피면서 황혼이혼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황혼이혼은 은퇴자들의 삶의 양식과 경제적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황혼이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함.

– 황혼이혼을 겪는 은퇴자들은 한정된 은퇴자산을 분할하며, 주거를 분리하면서 1인 가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빈곤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황혼이혼이 증가하면 노노(老老)부양 등 고령자 가계가 일정 부분 감당하던 부양 책임이 사회로 이전됨. 정부는 이로 인한 복지 책임 증대를 인식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대응해야 함.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 · 저금리 · 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 · 고령화로 인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합니다 .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4 은퇴자산은 질병 ·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공적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低1高 시대'를 맞아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데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은퇴콘텐트 개발 및 연구, 전문적인 은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를 통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은퇴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31] '은퇴자금 승수'로 알아보는 나의 은퇴자금 계산법, 2017.1
[32]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2017.3
[33] 노후자금 인출의 숨겨진 위험 시퀀스리스크, 2017.5
[34]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배우는 노후자금 인출전략, 2017.10
[35]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2018.2
[36]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2018.4
[37]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2018.10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40] 초장수 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은퇴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재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